발 간 등 록 번 호
11-1170000-000429-06

ISSN 2287-2752

1월의 법제소식

vol. 56

최근입법동향

청년 실업해소 등 청년 고용 관련

법제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철저한 차단방역과 주기적인 소독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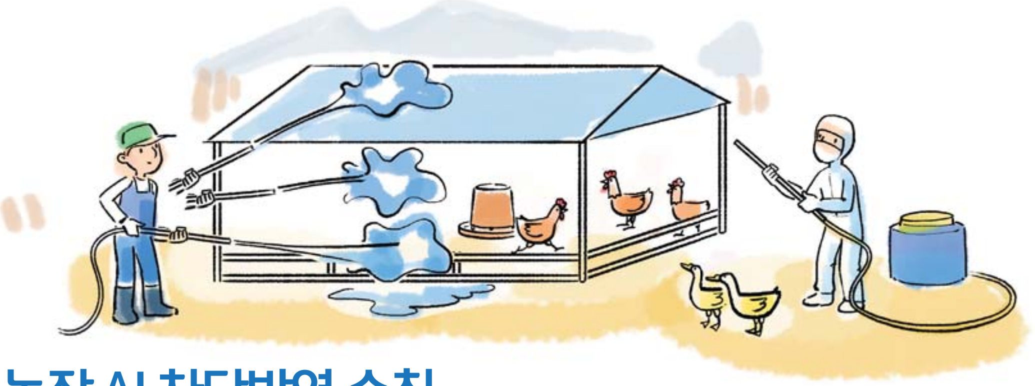

가금농장 AI 차단방역 수칙

1. 농장 및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및 통제
2. 농장에 출입하는 차량 출입 전·후 소독 실시
3. 농장 출입 전·후 소독(특히 손, 신발) 및 환복
4. 사료변 주변 사료 즉시 제거, 주기적 소독 실시
5. 쥐 야생조류 등 침입 방지용 휀스, 그물망 설치
6. 축사 출입 전 환복, 신발 교체를 위한 전실 설치, 축사 출입구 발판소독조 설치
7. 축사 내·외부 및 장비 등 철저히 소독

야생조류 우리 농장에 가까이 못오게 하세요!

※ 야생조류 차단방역 수칙이란? 야생조류에 의해 AI바이러스가 농장에 유입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대응방안입니다.

1. 야생조류의 접근과 철새분변과의 접촉을 차단하면 고병원성 AI 발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축주, 가족, 농장 종사자도 외출 후, 귀가 시 신발과 의복을 반드시 소독해야 합니다.
3. 철새 서식지나 도래지 주변 출입을 자제해야 합니다. (특히 농장주변 하천·논·밭 등)
4. 축사에 그물망을 설치하고 주변을 청소하여 야생조류의 접근을 차단합니다.
5. 축사 주변의 야생조류 분변을 관찰하고, 발견 시 수거 소각하고 철저하게 소독해야 합니다.

가축방역 의심축 신고전화(국번없이)

1588-4060(관할지자체) / 1588-9060(농림축산검역본부)

농림축산식품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1월의

법제소식

02 **심사경과보고서**_ 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적용 대상자의 적합성

06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위기가족긴급지원의 절차 및 방법

09 |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구제급여 환수를 위한 강제징수

16 **법령해석 사례**_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
농림축산식품부 - 동물실험 시행기관이 아닌 기관 또는 동물실험시설이 아닌 시설에서 시행한 동물실험이 동물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

24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_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시장은 재화나 서비스 구매 시 구미시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28 **최근 입법동향**_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실
청년 실업 해소 등 청년고용 관련 최근 의원발의 법률안

행정심판 재결례_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
34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46 • 인삼류 자체검사업체 지정취소처분 취소청구

54 **조세심판 결정례**_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쟁점부동산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58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_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실
시간선택제 일자리 관련

70 **새 법령 소개**

80 **법제소식**

92 **이용안내**

법제소식
2017년 1월호 (통권 제 56호)

발행처 | 법제처
발행인 | 제정부
편집 | 대변인실(044-200-6513)
발행처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어진동, 법제처)
제작 |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031.906.7735
발간등록번호 | 11-1170000-000429-06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적용 대상자의 적합성

글. 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

가. 원안의 내용 및 취지

- 원안은 항만시설의 경비 · 검색업무를 위탁받은 업체의 임직원에 대해서 뇌물죄 등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려는 것임.

원 안	심 사 안
제46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8조에 따라 보안심사업무 등을 대행하는 대행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6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1조의3에 따른 항만보안 위탁업체와 제38조 ―――.

나. 검토대상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규정은 공공기관 등의 임직원 또는 행정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의 임직원과 개인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의 수수 등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공무원과 같이 보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 원안과 같이 항만시설소유자(민간)로부터 경비 · 검색업무를 위탁받은 업체의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는 것이 적합한지 검토가 필요함.

다. 검토의견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규정의 적용 대상자는 기본적으로 행정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과 개인, 각종 위원회의 위원 등이나,
  - 이러한 기관의 임직원 모두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업무의 공공성, 수탁업무의 성질, 임직원의 업무의 관여 정도 등에 따라 임직원 모두를 적용 대상으로 할 것인지를 판단해야 할 것임.

- 원안의 경우, 항만시설의 경비 · 검색업무는 항만시설소유자에게 부과된 업무로서 항만시설소유자는 국가 뿐만 아니라 항만공사, 민간 등이 포함되므로 민간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의 임직원까지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된다는 문제가 있음.

- 다만,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규정의 취지는 다루는 업무의 공공성이 크기 때문에 그 업무 수행 시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 다수의 인명피해나 국가 안보의 위기 상황과 직결되는 항만시설의 보안 확보 · 유지를 위하여 항만시설소유자에게 경비 · 검색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해당 업무의 공공성은 매우 크다는 점에서 공무원 의제 규정을 둘 필요는 인정됨.

※ 특히 보안검색 업무의 경우, 법 제22조제2항에서는 항만시설소유자가 파업 등으로 보안검색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 경찰관서의 장 또는 세관장이 직접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업무의 공공성을 인정할 수 있음.

● 또한, 민간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 기관의 임직원에게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규정을 적용한 입법례도 있음.

〈참고 입법례〉

「교통안전법」

제34조 (교통시설설치자의 교통안전진단)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도로 · 철도 · 공항 · 항만 등의 교통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교통시설설치자"라 한다)는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교통안전진단기관(이하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이라 한다)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통안전 관련 공공기관(이하 "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교통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3.28., 2012.6.1.〉

② (생 략)

제6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4조 및 제36조에 따라 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교통안전진단기관의 임 · 직원,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교통안전과 관련된 전문기관 · 단체의 임 ·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공동주택관리법」

제48조(하자진단 및 감정) ① 사업주체등은 제37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등의 하자보수 청구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등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에 보수책임이 있는 하자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하자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진단을 의뢰받은 안전진단기관은 지체 없이 하자진단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사업주체등과 입주자대표회의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제9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40조제1항에 따른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국 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
2. 제48조제1항에 따라 하자진단을 실시하는 자
3. 제71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국 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

라. 심사안

● 항만시설 경비 · 검색업무의 공공성과 입법례를 고려하여, 원안을 수용함.

현 행	원 안	심 사 안
제46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8조에 따라 보안심사업무 등을 대행하는 대행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6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1조의3에 따른 항만보안 위탁업체와 제38조――.	제46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31조제2항제2호에 따라 경비 · 검색업무를 위탁받은 업체의 임직원 2. 제38조에 따라 보안심사업무 등을 대행하는 대행기관의 임직원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위기가족긴급지원의 절차 및 방법

(안 제2조의3)

글. 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

가. 원안의 내용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인하여 가족의 부양 · 양육 · 보호 · 교육 등 가족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경우 원활하게 가족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긴급하게 필요한 범위에서 지원을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이 개정됨에 따라, 위기가족긴급지원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현 행	심 사 안
〈신 설〉	제2조의3(위기가족긴급지원의 절차 및 방법) ① 누구든지 제2조의2에 따른 재난으로 가족의 부양 · 양육 · 보호 · 교육 등 가족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가족(이하 "위기가족긴급지원대상 가족" 이라 한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기가족긴급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위기가족긴급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또는 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위기가족긴급지원 담당공무원등" 이라 한다)로 하여금 위기가족긴급지원대상 가족의 거주지 등을 방문하여 위기가족긴급지원이 필요한지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 또는 관할 소방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위기가족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기가족긴급지원의 종류와 내용을 결정하여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기가족긴급지원대상 가족에 대하여 신속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기가족긴급지원의 종류와 내용을 결정하기 전에 위기가족긴급지원 담당공무원등으로 하여금 필요한 지원을 하게 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른 확인을 하는 위기가족긴급지원 담당공무원등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나. 검토대상

- 위기가족긴급지원의 주체

다. 검토의견

- 법 제21조의2제1항에서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에 의하여 가족의 부양 · 양육 · 보호 · 교육 등 가족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경우 원활한 가족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긴급하게 필요한 범위에서 지원 (이하 "위기가족긴급지원" 이라 한다)을 하는 의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있음.

- 그러나 부처 원안에서는 위기가족긴급지원의 요청을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하도록 하고, 위기가족긴급지원을 하는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문제됨.

- 검토 결과, 원칙적으로는 법률에서 규정한 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를 위기가족긴급지원의 주체로 정하여야 하나, 현재 위기가족긴급지원 수요 등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위기가족긴급지원을 요청받아 지원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차후에 국가가 위기가족긴급지원을 직접 할 필요가 있을 때 시행령을 개정하여 위기가족긴급지원주체에 국가를 추가하는 것으로 소관부처와 합의함.

라. 심사안

- 위와 같은 사항을 반영하고 소관부처와 합의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안과 동일하게 정리함.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제급여 환수를 위한 강제징수

(원안 제21조)

글. 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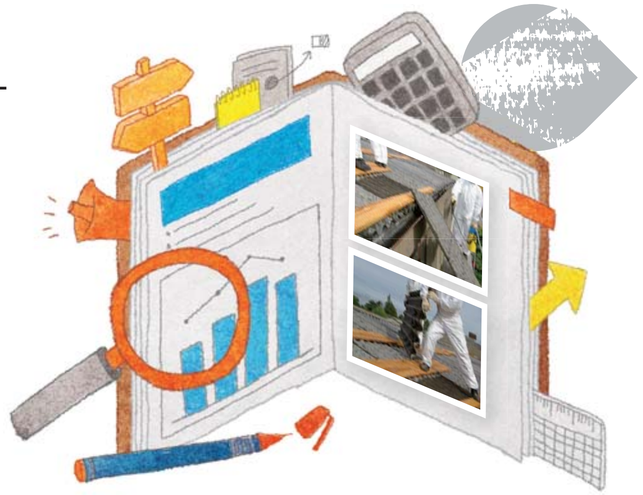

가. 원안의 내용

- 원안은 석면피해로 인한 구제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잘못 지급된 구제급여의 환수주체를 환경부장관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함)으로 변경하고, 기술원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금을 징수하도록 함(원안 제21조)

※ 이 법의 개정으로 석면피해인정, 구제급여의 지급결정 등의 석면피해구제업무를「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이관함.

현 행	심 사 안
제21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급여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를 말한다)을 징수하여 제24조에 따른 석면피해구제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21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기술원은**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기술원은 제1항에 따른 구제급여를 환수하는 경우에는 환수금을 내야할 자가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나. 원안의 문제점

- 환경부는 석면피해로 인한 구제급여 지급 기관 및 구제급여 환수 기관이 기술원과 환경부장관으로 이원화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원안과 같이 구제급여 환수의 주체를 "환경부장관" 에서 "기술원" 으로 변경하면서 구제급여 환수를 위한 체납처분 권한까지 부여함.

- 그러나, 체납처분은 의무자가 독촉장에 의해 지정한 납부기한까지 의무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 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이를 매각하고 청산하는 일련의 강제징수인바,
  - 원안과 같이 국가로부터 구제급여 환수 업무를 위탁 받은 기술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에 잘못 지급된 구제급여의 환수를 위한 강제징수 권한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적합한지가 문제됨.

다. 행정상 강제징수에 법적 근거 및 입법례 검토

1. 행정상 강제징수의 개념 및 법적 근거

- 행정상 강제징수란 국민이 국가 등 행정주체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행정청이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의무가 이행된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하는 행정상 강제집행수단을 말함.

- 행정상 강제징수는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을 수반하므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국세납부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에서 일반적으로 강제징수를 인정하고 있음

2. 강제징수 입법례

- 의무를 명하는 행위와 의무내용을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행위는 별개의 행위이므로 행정법상의 의무를 명할 수 있는 명령권의 근거가 되는 법이 동시에 행정강제의 근거가 될 수는 없고, 각각 별도의 법률상 근거가 있어야 함.

- "강제징수" 의 법적 근거에 관한 입법례를 살펴보면, 국가가 부담하는 급여와 관련한 강제징수에 대하여 국가가 아닌 공공기관이 급여 징수권한을 가지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사례가 있음.

  * 입법례: 붙임1 (P13 ~ P15)

  - 국가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급여, 산업재해보상급여, 국민건강보험급여 등 사회보장적 성격의 사업에 관하여 근로복지공단 등의 공공기관이 위탁받아 하는 경우 급여의 지급 권한 외에도 잘못 지급된 급여 등의 징수 환수 및 이를 위한 강제징수도 수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다만, 위탁 받은 기관이 강제징수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도록 하고, 나아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는 등의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라. 검토의견

- 이 법의 목적은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입었으나 마땅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그동안 석면사용으로 인한 혜택을 공유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산업계가 함께 마련한 재원으로 기금을 설치하여 구제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것인바,
  - 구제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 안에 완전한 환수가 이루어져야 이 법의 목적에 맞게 구제가 필요한 석면 피해자에게 제대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할 것임.

- 국가가 부담하는 급여와 관련한 강제징수에 대한 다른 입법례에서 해당 업무를 위탁 받은 공공기관이 급여의 지급 권한 외에도 잘못 지급된 급여 등의 징수권한을 가지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강제징수 업무도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 이는 부당하게 지급된 사회보장 급여에 대한 조속하고 완전한 환수라는 공익적 필요성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또한, 「석면피해구제법」 제34조에 따르면 석면피해구제 분담금 징수에 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준용하고 있는바,
  –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석면피해구제 분담금 부과 · 징수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석면피해구제 분담금을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고 있음.

- 원안에서도 기술원이 구제급여 환수금을 징수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정하고 있어 절차적 적법성을 보장할 수 있는 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고,
  – 더욱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에 제32조 따르면 기술원의 임직원은 형법상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 규정이 적용되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성과 책임성이 확보된다고 할 것임.

마. 심사결과

- 원안을 유지하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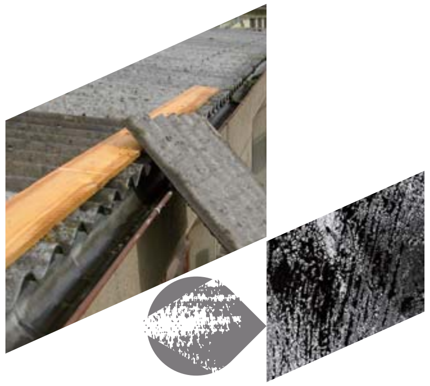

입법례

「석면피해구제법」

제31조(석면피해구제분담금) ①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 등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이하 "분담금" 이라 한다)을 징수하여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이하 "사업주" 라 한다)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주에 대하여는 분담금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1. 상시근로자 수가 20명 미만인 사업주(건설업은 제외한다)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보험료징수법" 이라 한다) 제8조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건설공사

③ 제2항제1호의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준용) 이 법에 따른 **분담금이나 그 밖의 징수금의 납부 및 징수에 관하여는**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11까지,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19조의2, 제20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5조, 제26조의2, 제27조,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까지,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및 제5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또는 **"보험료" 는 "분담금" 으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 은 "환경부장관(이 법 제51조에 따라 그 권한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말한다)"** 으로,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 또는 "보험료율" 은 "분담금률" 로, "월별보험료" 는 "월별분담금" 으로, "보험가입자" 는 "사업주" 로, "개산보험료" 는 "개산분담금" 으로, "보험연도" 는 "회계연도" 로, "보험관계" 는 "석면피해구제분담금관계" 로, "확정보험료" 는 "확정분담금" 으로, "보험사무" 는 "석면피해구제분담금사무" 로, " 「고용보험법」 제7조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는 "환경부장관" 으로 본다.

제51조(권한의 위임 · 위탁)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 · 도지사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제31조에 따른 **분담금의 부과 · 징수에 관한 사무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지원금의 환수) ① 국가는 제21조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환수할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환수대상이 되는 지원금은 공단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환수에 관하여는 제27조, 제28조 및 제2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건강보험공단" 은 "공단" 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환수의 구체적인 기준 및 환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징수금의 체납처분 등) ① 건강보험공단은 제2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보험료나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른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한 재산을 공매하는 경우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의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 라 한다)로 하여금 압류한 재산의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매는 공단이 한 것으로 본다.
③ 건강보험공단은 제2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이 제90조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 청구하여 받은 금액은 징수할 금액에서 제외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2. 수급권자 또는 수급권이 있었던 자가 제1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3.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보험급여의 지급이 보험가입자 · 산재보험 의료기관 또는 직업훈련기관의 거짓된 신고, 진단 또는 증명으로 인한 것이면 그 보험가입자 · 산재보험 의료기관 또는 직업훈련기관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 공단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이나 제46조제1항에 따른 약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진료비나 약제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진료비나 약제비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제44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나 약제비를 지급받은 경우
2. 제40조제5항 및 제91조의9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진료비나 약제비를 지급받은 경우
3. 그 밖에 진료비나 약제비를 잘못 지급받은 경우
제85조(징수금의 징수) 제39조제2항에 따른 보험급여액의 징수, 제78조에 따른 장해특별급여액의 징수, 제79조에 따른 유족특별급여액의 징수 및 **제84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하여**는 **보험료징수법**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2조, 제39조, 제41조 및 제4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건강보험공단" 은 "공단" 으로 본다. 〈개정 2010. 1. 27.〉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보험료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① 공단은 제57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8조의2 및 제101조에 따라 보험료등을 내야 하는 자가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또는 지역가입자의 세대가 2명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 중 1명에게 한 독촉은 해당 사업장의 다른 사용자 또는 세대 구성원인 다른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6.2.3., 2016.3.22.〉
② 제1항에 따라 독촉할 때에는 10일 이상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④ · ⑤ (생 략)

「별정우체국법」
제30조(급여의 환수) ① 연금관리단은 급여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급여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와 환수 비용을 더하여 징수하고, 제2호나 제3호의 경우로서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2. 급여를 받은 후 그 급여의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3. 그 밖에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연금관리단은 제1항에 따라 급여를 환수할 때에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생 략)
④ 제2항과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는 연금관리단의 임직원은 공무원으로 본다.**

「공무원연금법」
제31조(급여의 환수) ① 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는 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급여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로서 환수금을 내야 할 자가 기한 내에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2. 급여를 받은 후 그 급여의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3. 그 밖에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급여를 환수할 때**에 환수금을 내야 할 자가 기한 내에 내지 아니하면 **인사혁신처장의 승인을 받아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생 략)
④ 제2항과 제3항 단서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는 공단의 임직원은 공무원으로 본다.**

질의제목

정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 동물실험 시행기관이 아닌 기관 또는 동물실험시설이 아닌 시설에서 시행한 동물실험이 동물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

「동물보호법」 제8조제2항제2호 등 관련

관련문서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 – 5518(2016. 8. 19.)

글.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

1. 질의요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는 "동물실험" 이란 교육 · 시험 · 연구 및 생물학적 제제의 생산 등 과학적 목적을 위하여 실험동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실험 또는 그 과학적 절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서는 동물실험 또는 이를 위하여 실험동물을 사육하는 시설인 동물실험시설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서는 동물실험을 실시하는 법인 · 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물보호법」 제23조에서는 동물실험은 인류의 복지 증진과 동물 생명의 존엄성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는(제1항) 등 동물실험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물보호법」 제8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서는 동물에 대하여 하는 것이 금지되는 행위로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같은 조 제2항제2호 본문)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 따른 동물실험시행기관이 아닌 기관 또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동물실험시설이 아닌 시설에서 「동물보호법」 제23조 각 항에 따른 동물실험의 원칙을 준수하여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실험을 하는 것이 「동물보호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동물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 질의배경

- 농림축산식품부는 초 · 중 · 고교 또는 사설학원 등 동물보호법령에 따른 동물실험시행기관이 아닌 기관에서 동물실험, 특히 동물해부실험을 하는 것이 「동물보호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동물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민원인의 법령해석요청 의뢰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 따른 동물실험시행기관이 아닌 기관 또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동물실험시설이 아닌 시설에서 「동물보호법」 제23조 각 항에 따른 동물실험의 원칙을 준수하여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실험을 하는 것은 「동물보호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동물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이유

「동물보호법」 제2조제4호에서는 “동물실험” 이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실험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는 “동물실험” 이란 교육 · 시험 · 연구 및 생물학적 제제(製劑)의 생산 등 과학적 목적을 위하여 실험동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실험 또는 그 과학적 절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보호법」 제2조제5호에서는 “동물실험시행기관” 이란 동물실험을 실시하는 법인 · 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서는 동물실험시행기관으로 국가기관(제1호),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제2호),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제8호)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서는 “동물실험시설” 이란 동물실험 또는 이를 위하여 실험동물을 사육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서는 동물실험시설로 「식품위생법」 에 따른 식품을 제조 · 수입 또는 판매를 업으로 하는 기관이나 단체(제1호가목), 「지역보건법」 에 따른 보건소(제2호)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물보호법」 제23조에서는 동물실험의 원칙으로 동물실험은 인류의 복지 증진과 동물 생명의 존엄성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하고(제1항), 동물실험은 실험에 사용하는 동물의 윤리적 취급과 과학적 사용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가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최소한의 동물을 사용하여야 한다(제3항)는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물보호법」 제8조제1항 각 호에서는 동물의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제1호),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제2호) 등 동물에 대하여 하는 것이 금지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서는 도구 · 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제1호 본문),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제2호 본문) 등 동물에 대하여 하는 것이 금지된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 따른 동물실험시행기관이 아닌 기관 또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동물실험시설이 아닌 시설에서 「동물보호법」 제23조 각 항에 따른 동물실험의 원칙을 준수하여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실험을 하는 것이 「동물보호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동물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실험" 이란 교육 · 연구 등 과학적 목적을 위하여 실험동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실험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행 동물보호법령에서는 동물실험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단지 「동물보호법」 제24조에서 유실 · 유기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제1호)과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등 사람이나 국가를 위하여 사역하고 있거나 사역한 동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제2호)을 금지하여, 동물실험의 대상이 되는 동물에 제한을 두고 있을 뿐 동물실험의 주체에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동물보호법」 제2조제5호에서 "동물실험시행기관" 이란 동물실험을 실시하는 법인 · 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서 그에 해당하는 기관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동물보호법령에서 동물실험시행기관을 구체적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동물실험이 해당 기관의 주요 업무에 해당하는 등 동물실험이 계속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기관을 동물실험시행기관으로 지정하여 「동물보호법」 제26조 등에 따라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관리 · 감독 하에 실험동물이 윤리적으로 취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일 뿐 동물실험시행기관이 아닌 기관의 동물실험을 금지하기 위한 것은 아니며, 동물보호법령상 동물실험시행기관만이 동물실험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지도 않으므로, 동물실험시행기관이 아닌 기관에서 교육 · 연구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동물실험 일체가 금지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 따른 동물실험시행기관이 아닌 기관이 「동물보호법」 제8조제2항제2호 본문에 따라 살아 있는 상태의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는 등의 행위를 포함하는 동물실험을 실시하더라도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동물실험의 원칙을 준수하여 동물실험을 실시한다면 해당 실험은 「동물보호법」 제8조제2항제2호 단서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법 제23조에 따라 동물실험의 원칙을 준수하여 실시하는 동물실험" 으로 동물학대행위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르면 동물실험시설이란 동물실험 또는 이를 위하여 실험동물을 사육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서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으로, 실험동물에 관한 법령 역시 동물보호법령과 마찬가지로 동물실험시설이 아닌 시설에서 동물실험을 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 않다는 점,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해당 법률은 식품 · 건강기능식품 · 의약품 · 의약외품 · 생물의약품 · 의료기기 · 화장품의 개발 · 안전관리 · 품질관리 및 마약의 안전관리 · 품질관리에 필요한 실험에 사용되는 동물과 그 동물실험시설의 관리에 적용되는 법으로, 교육 · 시험 · 연구 등 과학적 목적을 위하여 실험동물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모든 종류의 동물실험을 규율하는 법률이 아니라 동물실험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부 분야에 대한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동물실험시설이 아닌 시설에서 시행한 동물실험이 곧바로 동물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 따른 동물실험시행기관이 아닌 기관 또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동물실험시설이 아닌 시설에서 「동물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동물실험의 원칙을 준수하여 동물실험을 실시한다면 이는 같은 법 제8조제2항 각 호에 따라 금지되는 동물 상해행위가 아닐 뿐만 아니라, 설령 실험으로 인해 실험동물이 죽음에 이르게 된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고의적인 동물 살해행위, 즉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제1호)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동물실험은 「동물보호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동물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 따른 동물실험시행기관이 아닌 기관 또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동물실험시설이 아닌 시설에서 「동물보호법」 제23조 각 항에 따른 동물실험의 원칙을 준수하여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실험을 하는 것은 「동물보호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동물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질의제목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시장은 재화나 서비스 구매 시 구미시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관련문서

구미시 투자통상과–7259(2016. 9. 29.)

글.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

1. 질의요지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시장은 재화나 서비스 구매 시 구미시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2. 의견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서 구미시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체결 시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제한입찰, 지명입찰, 수의계약으로 물품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3. 이유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구미시 조례안" 이라 함)은 구미시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기업과 외국인 투자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제1조)으로서, 구미시에 투자하기로 한 기업에 대해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취지로 같은 조례안 제26조의2에서 "시장은 재화나 서비스 구매 시 구미시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바, 이와 같이 조례에서 우선구매 규정을 두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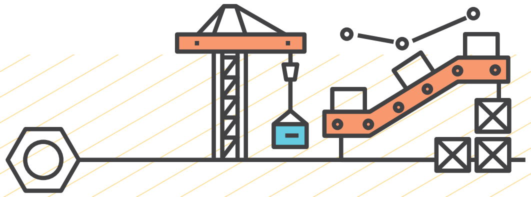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 라 함은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를 의미하는바(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추103 판결 참조), 물품 및 용역의 구매는 지방자치단체와 상대기업 간 계약 체결을 통해 구매하게 될 것이므로, 이 사안에서는 구미시 조례안 제26조의2의 내용이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계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이라 함)에 위배됨이 없는지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방계약법 제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 에 부쳐야 하나, 계약의 목적 · 성질 · 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 에 부치거나 '수의계약' 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여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시공능력, 실적, 기술보유상황, 재무상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서는 제한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제22조에서는 지명입찰에 의할 계약, 제25조제1항에서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종합해 볼 때, 지방계약법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지 않는 한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일반입찰에 부치도록 하고, 계약의 목적 · 성질 · 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제22조 및 제25조제1항 각 호에 열거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입찰참가자 자격 제한, 지명입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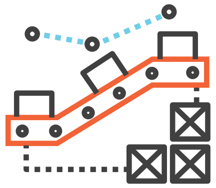

이러한 법령의 규정을 전제로 구미시 조례안을 살펴보면, 구미시 조례안 제26조의2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물품이나 용역 구매를 위한 계약상대방 선정 과정에서 '구미시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기업' 에 우선권을 주어 경쟁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일반입찰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구미시 조례안 제26조의2의 우선구매 규정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이 내용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제22조 및 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거나, 다른 법령에 이러한 우선구매의 근거규정이 있는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구미시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제22조 및 제25조제1항 각 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등 다른 법령에도 이러한 우선구매의 근거규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구미시 조례안 제26조의2에서 시장은 재화나 서비스 구매 시 구미시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체결 시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제한입찰, 지명입찰, 수의계약으로 물품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지방계약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제22조, 제25조제1항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구미시 조례안에서 구미시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체결 시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제한입찰, 지명입찰, 수의계약으로 물품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지방계약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실업 해소 등 청년고용 관련 최근 의원발의법률안

글.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실

Ⅰ | 배경

지난 2016년 6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은 10.3%로서 1997년 외환위기 직후보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년실업률과 전체실업률의 격차는 6.7%로 역대 최고 수준인 1998년의 5.6%를 넘어서고 있다. 청년실업의 문제는 단순히 청년이 처한 개인적 삶의 문제를 넘어서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서 이의 해소를 위한 효과적인 대안 마련과 효율적인 정책추진이 필요하다. 이에 2016년 11월 1일부터 한 달간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의원발의법률안 중 청년 실업해소 등과 관련된 의원발의법률안을 소개하고자 한다.

Ⅱ | 청년발전기본법안 (제4070호, 김해영의원 대표발의)

1. 법의 목적

청년이 지닌 무한한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하고,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청년” 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함(안 제2조).

나. 실태조사 및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 시행 등

(1) 국무총리는 청년 참여의 촉진, 청년의 능력개발, 청년 고용의 증대 및 청년

창업의 지원 등을 포함하는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 · 시행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 · 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 시행하도록 함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 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정책조정회의를 두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청년정책책임관을 지정하여 그 기관의 청년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 · 시행할 수 있도록 함 (안 제9조 및 제10조).
(3) 국무총리는 청년과 관련된 문제의 기초조사와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청년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다. 합의제기구에 청년 참여보장 및 청년주간신설 등
(1) 국가는 1년 중 1주간을 청년주간(靑年週刊)으로 지정함 (안 제11조).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 등 합의체를 구성할 때 청년을 일정 비율 이상 위원회 등에 참여하도록 하는 등 정책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고용 촉진, 창업 지원 등 대책을 수립 · 시행하도록 함(안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

라. 청년단체지원 등(안 제19조, 제20조)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 참여의 촉진, 청년발전의 도모 및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관련시설을 설치 · 운영할 수 있고,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청년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2) 정부는 해마다 주요 청년정책에 관한 연차보고서(年次報告書)를 작성하여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함

Ⅲ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1. 청년일자리 전담기관 설치 및 청년일자리 선도기업 선정 · 지원 (김진태의원 대표발의)
(1)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전문적 · 체계적으로 연구 · 개발하고 고용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일자리 전담기관' 을 설치 · 운영하거나 전문기관을 지정함.
(2)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 민간 기업 및 단체 등과 공동투자하거나 상호협력 등을 통해 청년일자리를 창출 · 확대하는 기업을 '청년일자리 선도기업' 으로 선정 · 지원함.

2. 청년의무고용 확대 및 위반시 처벌강화 (신상진의원 대표발의, 이훈의원 대표발의)
(1)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만 한정하여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하던 것을 4% (이훈의원 대표발의안은 5%)로 상향조정함.
(2)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으로서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인 민간기업도 적용대상으로 확대함.
(3) 의무고용률을 위반한 사업주에게 고용부담금을 부과 · 징수하도록 하여 고용의무 이행 민간기업에 고용지원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4) 한시법인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3. 청년세 신설 및 청년고용촉진특별회계의 설치(정세균의원 대표발의)
(1)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확대를 위하여 청년고용촉진특별회계를 설치함.
(2) 청년고용촉진특별회계는 「청년세법」 에 따른 청년세액, 일반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공공부문에서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 지원, 청년 미취업자 또는 저소득 청년 재직자에 대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이자 지원 등에 사용함.
(3) 한시법인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4. 고용노동부장관의 청년고용 촉진관련 제도개선 요청권(신보라의원 대표발의)

(1) 고용노동부장관은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의 심의 · 평가 결과에 따라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제도에 관하여 제언을 하거나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조제3항 신설).

(2) 정부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이 청년 고용의무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에 필요한 정원과 인건비 확보 등의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안 제5조제4항 신설).

(3) 한시법인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Ⅳ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구직자에 대한 불필요한 정보요구 등 금지 (이정미의원 대표발의)

(1)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 대상 업무에 대한 직격 여부와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을 채용서류로 작성 또는 제출하게 하거나 면접시험 등에서 질문하여서는 아니되도록 함

(2)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구인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성한 기초심사자료 표준양식 사용을 구직자에게 고지하도록 의무화함.

Ⅴ | 취업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제도를 대학원생도 적용하도록 확대함 (김민기의원 대표발의)

2. 대출원리금 미납시 연체금 상환이자를 월단위로 계산하던 것을 일할 계산방식으로 변경함 (이명수의원 대표발의)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에 대하여는 대학재학기간에 대하여는 대출이자 산정시 면제하여 학자금 대출금 상환부담을 완화함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Ⅵ | 입법전망

청년이 일하지 못하는 사회는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그 국가의 미래는 암울하다. 청년실업의 문제는 단순히 청년이 처한 개인적 삶의 문제를 넘어서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서 이의 해소를 위한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청년실업의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맞는 대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나아가 보조금 지급 등 재정지원이나 민간기업 강제고용의무 등의 부과와 같은 조치 등의 경우에는 헌법적 가치인 평등의 원칙이나 영업의 자유 등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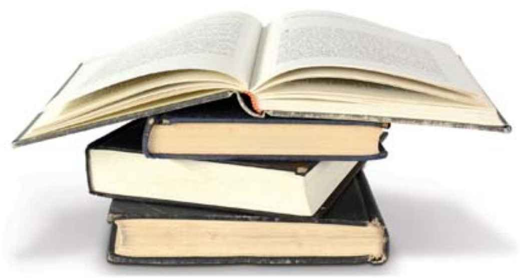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_1]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글.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

사 건	2015-○○○○○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	배○○ (○○자원 대표)
피 청 구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심 판 청 구 일	2015. ○. ○.

주 문

피청구인이 2015. ○. ○. 청구인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건설(주)은 ○○환경공단 ○○사업소와 '1호기 반응식여과집진기 개 · 보수공사' (이하 '집진기공사' 라 한다)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시행한 사업체인데, ○○시에서 고철도매업을 하는 청구인이 ○○건설(주)과 ○○건설(주)이 집진기공사에서 철거한 집진기를 고철로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집진기 해체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 이라 한다)을 하다가 청구인 소속 근로자 고 서○○(이하 '고인' 이라 한다)이 철판구조물에 깔려 사망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 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 이라 한다)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했다는 이유로 2015. ○. ○. 청구인에게 위 산재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7,117만 5,000원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건설(주)은 ○○환경공단 ○○영업소와 집진기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른 마무리 공사로서 청구인에게 철거한 집진기의 처리를 수행하게 한 것이고, 청구인은 ○○건설(주)과 고철(철거 집진기)을 Kg당 140원에 매입하는 조건으로 구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고철 시세는 Kg당 220원이었는바, 이는 ○○건설(주)이 인건비 등 부대비용인 고철 Kg당 80원을 부담하는 계약으로서 청구인에게 보수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형식적으로는 매매계약의 형태이나 실질적으로는 도급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 이라 한다) 제9조에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총공사' 란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 · 보수 · 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와 이에 따른 공사를 하기 위한 마무리공사까지 포함한다고 되어 있다.

다. 그런데 집진기공사는 ○○건설(주)이 ○○환경공단 ○○사업소와 계약을 체결하고 시행한 공사로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마무리 작업까지 ○○건설(주)의 책임 하에 실행된다고 볼 수 있으며, 이 사건 작업 역시 집진기공사의 마무리 작업으로서 청구인이 ○○건설(주)로부터 도급을 받아 시행한 것이므로, 이 사건 작업의 원수급인은 ○○건설(주)로서 동 ○○건설(주)이 이 사건 작업과 관련하여 보험료징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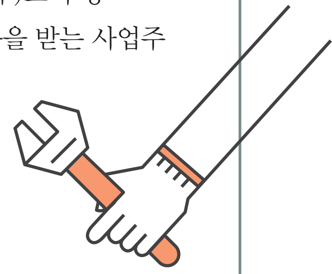

라. 따라서 집진기공사의 하도급업체인 청구인에게 산재보험급여액을 징수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작업은 청구인이 고철을 수집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ㅇㅇ건설(주)과 구두계약을 체결하고 시행한 것으로서, ㅇㅇ텍건설(주)이 시행하는 집진기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협력이 필요 없고, 공사 현장으로부터 100m 정도 떨어진 장소에서 이루어져 집진기공사와 동일 위험권 밖에서 고철을 수집하고 판매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 사업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당연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한다.

나.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는바, 이를 이유로 고인에 대하여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산재보험급여액을 징수한 이 사건 처분은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 · 타당한 처분이다.

4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 제9조, 제11조, 제2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34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공사입찰공고서, 설계도서, 공사도급표준계약서, 산재보험 적용 여부 의뢰, 문답서, 재해조사 의견서, 조사복명서, 사실확인서, 고용 ·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고용 ·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통지서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에 상호는 'ㅇㅇ자원' 으로, 성명은 '배ㅇㅇ' 로, 사업장 소재지는 'ㅇㅇ시' 로, 사업의 종류는 '업태: 도매업, 종목: 고철' 로, 개업연월일은 '2005. ㅇ. ㅇ.' 로 기재되어 있다.

나. ㅇ환경공단 ㅇ사업소는 2015. ㅇ. ㅇ.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공사입찰공고를 하였는데, 동 입찰공고에 첨부한 설계도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설계설명서

1. 공사명 : 1호기 반응식여과집진기 개 · 보수공사
2. 위치 : ㅇㅇ시 ㅇㅇ환경공단 ㅇㅇ사업소(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내)
3. 공사목적

유해가스 처리설비인 반응식여과집진기의 심각한 부식에 의한 파공으로 불안정한 연소가스처리와 정상적인 시설물 운영이 불가한 상태로 금번 전면개 · 보수를 통하여 시설물을 정상화 하고자함

4. 공사개요

· 여과집진기 Casing 및 Outlet Duct 제작 : 1식
· 여과집진기 Casing 및 Outlet Duct 철거 및 설치 : 1식
· 보온공사, 배관공사, 도장공사

6. 철거자재의 처리

· 공사 중 발생 고재 처리 : 수급자 처리
· 폐보온재 및 기타 폐기물처리 : 발주처 처리

● 일반시방서

5. 자재 및 인원

다. 발생품 처리

1) 작업 후 공구 및 기자재는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고, 공사 중 발생한 잔재물은 지정된 곳에 운반 후 수급자가 처리한다.

● 특별시방서

4. 공급범위 및 공사내용

나. 공사내용

1) 여과집진 Casing

구 분	명 칭	중량(ton)	비 고
Casing Part	Top Casing	13.062	2Set(1대분)
	Top door 및 Frame	5.989	2Set(1대분)
	Bottom Casing	15.845	2Set(1대분)
Duct Part	Outlet Duct	6.442	1Set(1대분)
	Inlet Duct	3.1×2	2Set(2대분)

2) 설치공사
3) 철거공사
3-1) Casing 및 Duct 철거 : 재사용 고려 안함
3-2) 재사용철거
7) 운송 및 반입
5. 공사시방
라. 철거공사
1) 철거물의 단위중량은 1ton 이하로 한다.
※ 1ton 이상, 대단위로 철거 시 소요되는 경비(운송, 장비비)는 수급자가 부담한다.

다. ㅇㅇ환경공단 ㅇㅇ사업소는 2015. ㅇ. ㅇ. ㅇㅇ건설(주)과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동 계약서에 계약금액은 '470,601,000원' 으로, 계약기간은 '2015. ㅇ. ㅇ. ~ 2015. ㅇ. ㅇ.' 로, 착공연월일은 '2015. ㅇ. ㅇ.' 로 기재되어 있다.

라. 고인의 배우자인 유ㅇㅇ이 2015. ㅇ. ㅇ.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산재보험 유족급여 · 장의비 청구서에 채용연월일은 '2015. ㅇ. ㅇ.' 로, 재해발생일은 '2015. ㅇ. ㅇ.' 로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2015. ㅇ. ㅇ. 근로복지공단 ㅇㅇ지사에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하여 고인의 산재보험 적용 여부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였다.

바. ㅇㅇ건설(주) 소속 직원으로서 집진기공사의 현장소장인 이ㅇㅇ이 근로복지공단 ㅇㅇ지사 소속 직원과 문답하고 작성한 2015. ㅇ. ㅇ.자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문: 집진기공사의 세부 내용은?
답: ㅇㅇ공단에 설치되어 있던 1호기 여과집진기의 일부분을 철거한 후 그 자리에다 여과집진기 일부분을 새로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문: 고인의 재해경위는?
답: 공사현장 내의 야적장에서 철거된 여과집진기 불용품에 대한 해체작업을 하던 중 해체된 철판이 넘어지면서 고인이 그 사이에 끼여 사망한 것입니다.
문: ㅇㅇ건설(주)에서 상기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원수급공사 중의 일부를 피청구인에게 하도급을 주어 시공하게 한 사실이 있나요?
답: 청구인이 직접 시공하였기에 도급을 준 사실은 없으며, 청구인에게 고철을 매매한 것입니다.
문: 청구인과 고인의 유족은 청구인이 ㅇㅇ건설(주)의 집진기공사 일부를 하도급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하도급을 준 것이 아닙니까?
답: 집진기를 해체하여 야적장에 두었던 고철을 청구인과 Kg당 140원을 받기로 하고 구두계약으로 팔았던 것이기 때문에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준 것은 아닙니다.
문: 매매계약이라면 구체적인 매매조건은?
답: 청구인이 야적장에 있는 고철을 본인 부담으로 운반하여 중량을 측정하고 Kg당 140원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으로서, ㅇㅇ기공(주) 김ㅇㅇ 소장에게 소개를 의뢰하였고, 동 김ㅇㅇ 소장이 청구인과 통화하여 단가를 ㅇㅇ건설(주)에 알려주었으며, 제가 그 단가대로 팔겠다고 하여 이루어진 계약입니다. 고철의 무게는 청구인이 차량에 싣고 가서 측정하고 알려주는 무게를 기준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문: ㅇㅇ건설(주)에서 ㅇㅇ기공(주)에 해체된 집진기를 판매한 것은 아닌가요?
답: ㅇㅇ기공(주)에 ㅇㅇ에 있는 고물상을 소개만 해 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문: 집진기 해체작업이나 해체한 집진기 시설물을 야적장으로 이동하는 작업에 청구인이 관여했나요?
답: 집진기 해체와 해체된 집진기를 야적장에 옮기는 작업은 ㅇㅇ건설(주)에서 했으며, 해체장소에서 야적장까지는 약 100m 정도이고, 청구인은 야적장에 모아놓은 고철을 본인의 비용과 책임 하에 해체 절단하여 가져가는 것을 담당하였으며, 집진기 해체나 해체된 집진기를 야적장에 옮기는 것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사. 청구인이 근로복지공단 ㅇㅇ지사 소속 직원과 문답하고 작성한 2015. ㅇ. ㅇ.자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문: 이 사건 작업 현장의 폐기물 고철 매입을 위하여 청구인이 투입한 장비와 인원은?
답: 절단작업자 2명, 근로자 김ㅇㅇ가 사용할 산소절단기 2개, 산소통 1개, LP가스통 1개, 5ton 집게차 1대 입니다. 고인은 자신이 작업할 산소절단기, 산소통, LP가스통을 직접 가져왔습니다.

문: ㅇㅇ환경공단 내 야적장에 집진기 폐기물(고철)이 어떤 형태로 놓여 있었나요?
답: 기존 설치되어 있던 집진기를 뜯어서 옮겨 놓은 것으로 완전히 해체되지 않은 구조물 형태로 공터에 놓여 있었습니다.
문: 공터(야적장)에 있던 고철의 추정량은 얼마나 되었나요?
답: 약 40~50ton 정도의 양으로 생각되었습니다.
문: 공터(야적장)에 있는 고철 매입단가를 Kg당 140원에 가져가기로 한 것이라면 청구인이 고철매입계약을 하면서 청구인의 책임 하에 고철을 절단하여 실어가기로 한 매매계약이 아닌가요?
답: 고철을 실은 차량이 계근대를 통과할 때 측정된 무게에 따라 고철대금을 계산하여 현장에서 즉시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야적장에서 고철을 절단하는 작업은 매매계약이 아니라 도급계약으로 보는 것입니다.

아. 근로복지공단 ㅇㅇ지사장은 2015. ㅇ. ㅇ. 피청구인에게 고인의 사망재해와 관련한 산재보험 적용 여부에 대하여 회신하였는데, 동 문서에 첨부된 조사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조사목적
– 고인의 유족이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하여 유족급여청구서를 제출함에 따라 청구인의 적용관계[원수급인 ㅇㅇ건설(주)의 하도급공사 여부] 조사

● 조사내용
– 집진기공사는 ㅇㅇ건설(주)이 낙찰받아 시공하는 공사로서 산재보험은 건설일괄로 적용되어 있으며, 2015. ㅇ. ㅇ. 사업개시신고서를 접수하였고, 공사금액은 415,520,000원(2015. ㅇ. ㅇ. ~ 2015. ㅇ. ㅇ.)으로 하여 처리 완료됨
– ㅇㅇ건설(주)은 여과집진기 철거작업을 2015. ㅇ. ㅇ.부터 같은 해 ㅇ. ㅇ.까지 직접 수행하였고, 철거된 집진여과지를 작업현장에서 100m 이상 떨어진 야적장으로 운반함
– 청구인은 고철수거업체로서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는 않았으며, 유선통화로 고철 수거비용 Kg당 140원에 수거하기로 하고 2015. ㅇ. ㅇ.부터 작업을 개시함
– 청구인 사업장은 2005. ㅇ. ㅇ. 사업개시를 하여 ㅇㅇ시에서 고철, 비철 수거업을 하는 업체로서 현재까지 고용 · 산재보험은 미가입상태 임

● 조사자 의견
– 청구인이 수행하는 작업은 여과집진기 해체가 목적이 아니라 고철수집을 목적으로 절단 수집하던 중에 재해가 발생하였으므로, 건설현장이 아닌 '도 · 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으로 청구인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피청구인이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자. 청구인이 작성한 2015. ㅇ. ㅇ.자 사실확인서에 이 사건 재해는 협력업체 공사장과 100m 떨어진 장소에서 발생되었고, 투입된 근로자는 고인과 김ㅇㅇ이며, 고인은 2015. ㅇ. ㅇ.부터 일당 15만원으로 채용하였고, 김ㅇㅇ는 2014년 ㅇ월부터 월급으로 매월 300만원씩 지급하였으며, 집게차로 고철을 계량하여 수집, 판매하고 있으나 압축은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차. 청구인은 일자미상일에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고용 ·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다.

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ㅇㅇ지역본부가 일자미상일에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하여 작성한 재해조사 의견서에, 재해발생 경위는 '2015. ㅇ. ㅇ. 15:50경 ㅇㅇ시에 소재한 ㅇㅇ건설(주)의 집진기공사 현장에서 고인이 철거작업 부산물인 집진기(고철, 10.8m×3.2m×2.3m, 2ton)를 LP가스를 이용하여 절단 · 해체작업 중 작업 중인 집진기가 넘어져 집진기와 집진기 사이에 끼임으로 사망한 재해' 로 기재되어 있다.

타. 근로복지공단 ㅇㅇ지사 소속 직원이 작성한 2015. ㅇ. ㅇ.자 조사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산재보험 당연적용 여부
– 이 사건 재해의 산재보험 적용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 현장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공사와는 별개의 사업으로 고철을 수집 판매할 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였다 하여 ㅇㅇ지사에서 피청구인에게 이송한 사건임(공사와 병행하여 공동작업을 수행한 것이 아니므로 별개의 사업으로 판단)

● 급여징수 여부
– 청구인은 근로자 김ㅇㅇ를 2014. ㅇ. ㅇ.부터 사용한 사실이 있어 같은 날을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같은 날부터 근로자 1명을 채용하여 오다가 2015. ㅇ. ㅇ.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해는 청구인이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의 재해에 해당하여 50%의 급여징수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타.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보험관계 성립일은 '2014. ㅇ. ㅇ.'로,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91001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으로 하여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조치를 하고 2015. ㅇ. ㅇ.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파. 피청구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2015. ㅇ. ㅇ. 청구인에게 고인의 유족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7,117만 5,000원의 산재보험급여액을 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동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등은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보험료징수법 제5조 및 제11조에 따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가입자가 되며,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2) 보험료징수법 제26조제1항에 근로복지공단은 ① 사업주가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②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는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보험급여액 징수는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하며,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3) 한편 보험료징수법 제2조,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원수급인' 이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말하되, 발주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하는 부분(발주자가 직접 하다가 사업의 진행경과에 따라 도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하는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는 발주자를 원수급인으로 보고,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보며, 하수급인은 사업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원수급인은 하수급인과 보험료 납부의 인계·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공사의 착공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수급인의 사업주 인정 승인을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4)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건설공사' 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하고, '발주자' 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로서 수급인으로부터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으며, '도급' 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에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하도급' 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수행한 이 사건 작업은 ㅇㅇ건설(주)이 시행한 집진기공사와 병행하여 공동으로 수행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의 사업내용인 고철수집을 목적으로 집진기를 절단한 것이어서 집진기공사와 별개의 사업내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작업에 대한 산재보험가입자는 청구인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ㅇㅇ건설(주)이 ㅇㅇ환경공단 ㅇㅇ사업소와 계약을 체결하고 시행한 집진기공사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집진기를 철거하고 새로 제작한 집진기를 설치하는 공사로 보이는데, 동 공사의 입찰공고상 설계도서에 공사 중 발생한 잔재물, 고재는 지정된 곳에 운반 후 수급자가 처리하고, 철거물의 단위 중량이 1ton 이상의 대단위로 철거할 때는 운송 및 관련 장비비용을 수급자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는바, 동 계약에 따라 철거된 집진기의 처리의무는 집진기공사의 수급자인 엔ㅇㅇ건설(주)에 있고 철거된 집진기의 운송 및 장비비용은 수급자인 ㅇㅇ건설(주)이 부담해야 하는 점, ㅇㅇ건설(주)과 청구인이 체결한 구두계약은 ㅇㅇ건설(주)이 수급받은 집진기공사의 일부 공사인 철거 집진기의 처리 부분을 청구인이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작업은 단순히 집진기공사에서 발생한 고재를 수집하여 반출하는 것이 아니라 10.8m×3.2m×2.3m 크기의 철거된 집진기를 LP가스 등을 이용하여 절단·해체하는 작업이 포함되어 있는 점, ㅇㅇㅇ건설(주)이 원수급인으로서 의무를 부담하는 고재나 잔재물의 처리는 일반적으로 고재를 발주자가 관리하는 공사 관련 장소에서 제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집진기공사 현장에서 약 100m 떨어진 ㅇㅇ환경공단 ㅇㅇ사업소 내 야적장에서 이루어진 청구인의 이 사건 고재 처리작업이 ㅇㅇ건설(주)의 집진기공사와 별개의 사업이나 단순한 고철의 매매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ㅇㅇ건설(주)과 청구인의 구두계약에 따르면 청구인이 ㅇㅇ건설(주)에 집진기 고철에 대하여 Kg당 14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당시 고철 시세는 Kg당 220원으로서 청구인은 그 차액인 Kg당 80원의 수익이 기대되어 결국 ㅇㅇ건설(주)이 청구인에게 집진기 철거작업의 대가로 Kg당 80원을 지급하는 형식이 되므로 청구인이 단순히 고철을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집진기 철거의 마무리 작업에 대한 도급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작업은 집진기공사의 원수급인인 ㅇㅇ건설(주)이 집진기공사의 마무리 작업 일부를 청구인에게 하도급을 주어 시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작업은 ㅇㅇ건설(주)의 집진기공사와 관련이 없는 청구인의 사업내용에 해당하여 이 사건 작업의 보험가입자는 청구인이라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_2]

인삼류 자체검사업체 지정취소처분 취소청구

글.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

사 건	2015–ㅇㅇㅇㅇㅇ 인삼류 자체검사업체 지정취소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	ㅇㅇ특산물영농조합법인(대표이사 박ㅇㅇ)
피 청 구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심 판 청 구 일	2015. ㅇ. ㅇ.

주 문

피청구인이 2015. ㅇ. ㅇ. 청구인에게 한 인삼류 자체검사업체 지정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백삼, 홍삼 등의 인삼류 제조자이며 자체검사업체로 지정된 법인으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검사를 받지 아니한 피부직삼 5종류와 절삼백삼 1종류 등 백삼 1,220Kg(이하 ‘이 사건 백삼’ 이라 한다)을 청구외 ㅇㅇ제약(주)에게 판매한 것은 「인삼산업법」 제17조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5. ㅇ. ㅇ. 청구인에게 인삼류 자체검사업체 지정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인삼산업법」 제17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인삼류의 제조자가 백삼 등에 그 원산지, 무게 및 제조자와 판매자의 성명을 표기하여 인삼제품류의 제조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자체검사나 인삼류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인삼류 제조자로서 원산지, 무게, 제조자와 판매자의 성명을 표기한 이 사건 백삼을 인삼제품류 제조자인 ㅇㅇ제약(주)에게 판매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검사의무는 위 법령에 따라 면제된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백삼이 인삼제품류의 원료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검사의 예외조항에는 매수자가 백삼 등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매도인이 알아야 한다거나 매수인이 백삼 등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는지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검사의 예외조항 적용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될 수 없다.

다. 또한 매도인인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매수자가 백삼 등을 그대로 재판매할지 인삼제품류의 원료로 사용할지 매수인의 주관적인 용도를 알 수 없으며, 매도인이 매수인의 주관적인 용도를 파악하지 못하였거나, 파악하였다 하더라도 매수인이 파악한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검사의 예외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위 예외조항은 사문화될 것이다.

라. 또한 ㅇㅇ제약(주)은 인삼류를 원료로 하는 인삼제품인 ‘ㅇㅇ 홍삼귤피차’ 등을 제조하고 식품 제조 외에도 약초의 효능에 대해 연구개발 등을 하는 업체이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백삼을 ㅇㅇ제약(주)에게 판매하면서 이 사건 백삼은 인삼제품류 제조의 원료로 사용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이 하등 이상한 일이 아니며 객관적으로 충분한 설득력을 가진다 할 것이다.

마. 따라서 청구인은 위 예외조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할 의무가 없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인삼산업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홍삼, 백삼 등을 판매 목적으로 제조한 자는 자체검사하거나 인삼류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나,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는 인삼제품류 제조자에게 판매할 경우 검사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미검사 상태의 인삼류를 인삼제품류 제조자에게 판매하기 위해서는 인삼제품류의 원료로 사용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한다.

나. ㅇㅇ제약(주)의 경우 'ㅇㅇ 홍삼귤피차' 등 생산하는 인삼제품에 모두 홍삼을 사용하고 백삼으로는 인삼제품류를 제조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백삼을 인삼류(뿌리삼)로 판매하였다.

다. 또한 이 사건 백삼은 복잡한 제조과정을 거쳐 상대적으로 고가에 거래되는 절삼백삼과 피부직삼인바, 저가인 인삼제품류의 원료로 사용된다는 것은 일반적인 인삼류 거래 관행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라.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백삼이 인삼제품류의 원료로 사용되지 않고 인삼류 상태로 판매된다는 것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미검사 상태로 판매한 것이므로 검사의 예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 · 타당하다.

4 관계법령

인삼산업법 제2조, 제12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9조, 제31조

인삼산업법 시행령 제4조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별표 4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인삼류제조업신고필증, 거래명세서, 확인서, 범죄인지 보고,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청문조서, 이 사건 처분서, 식품 품목제조보고서, 의약품 제조판매 품목신고(변경신고)필증, 영업등록증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인삼류제조업신고필증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0. ㅇ. ㅇ. ㅇ시장에게 백삼, 태극삼, 홍삼, 흑삼을 제조하는 인삼류제조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07. ㅇ. ㅇ. 피청구인에게 인삼류 자체검사업체 지정신청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7. ㅇ. ㅇ. 청구인을 인삼류 자체검사업체로 지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5. ㅇ. ㅇ. ㅇㅇ제약(주)에게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이 사건 백삼을 1억 7,266만 3,600원에 판매하였다.

라. 청구인 소속 생산팀장 김ㅇㅇ은 2015. ㅇ. ㅇ. '2015. ㅇ. ㅇ. 이 사건 백삼을 검사를 받지 않고 ㅇㅇ제약(주)에 판매하였음을 확인하며, 검사를 받지 않은 이유는 ㅇㅇ제약(주)에서 약사법 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아 사용할 것이라고 하여 이번에 처음 거래한 것이다' 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ㅇㅇ지원 ㅇㅇ사무소에서 2015. ㅇ. ㅇ. 작성한 '범죄인지 보고' 에 따르면, '인삼류 미검사품에 대한 특별단속을 하던 단속반에서 ㅇㅇ제약(주)을 점검하던 중 검사를 받지 않은 이 사건 백삼을 구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거래명세표 등을 송부함에 따라 2015. ㅇ. ㅇ.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인을 방문하여 생산팀장을 추궁하자, ㅇㅇ제약(주)은 인삼제품류 제조업체로 검사예외에 해당되며 약사법 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아 사용하기 때문에 검사를 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였다고 시인하였으나, 「인삼산업법」 위반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는 취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바. 피청구인은 2015. ㅇ. ㅇ.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할 예정임과 2015. ㅇ. ㅇ. 청문을 실시할 예정임을 통보하였다.

사. 청구인은 2015. ㅇ. ㅇ. 피청구인에게 '인삼류 제조자가 백삼에 원산지, 무게 및 제조자와 판매자의 성명을 표기하여 인삼제품류의 제조자에게 판매한 경우에 해당되고, ㅇㅇ제약(주)은 의약품 한약재 제조 판매업과 동우당 인삼의 품목신고를 ㅇㅇ식약청에 하였는데 「인삼산업법」 의 인삼류가 의

약품에서는 인삼제품류로 인허가 관리되고 있어 「인삼산업법」에서 정의한 인삼제품류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인삼산업법 시행령」 제4조 검사의 예외를 적용하여야 한다’ 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2015. ○. ○. 청문을 실시하였으며 청문조서의 내용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인삼산업법」 제17조제1항단서, 시행령제4조의 적용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ㅇㅇ제약(주)에 백삼을 판매할 당시 원산지, 무게 및 제조자와 판매자의 성명을 표기하여 판매한 것은 사실이므로 이 규정의 적용여부는 ㅇㅇ제약(주)이 인삼제품류의 제조자에 해당되는지, 그 백삼이 실제로 인삼제품류의 제조에 사용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됨
- ㅇㅇ제약(주)은 식품위생법상 식품제조업 관련 신고를 하였을 뿐 「인삼산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삼제품류 제조업 신고를 한 사실은 없음
- ㅇㅇ제약(주)이 청구인에게서 구입한 이 사건 백삼은 인삼제품류 제조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백삼 그대로 한약재로 판매한 것으로 보임
- 청구인은 ㅇㅇ제약(주)에서 이 사건 백삼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 알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인삼류를 제조하고 남은 부산물이 아닌 고가의 백삼을 이용하여 인삼제품류를 제조한다는 것은 비상식적이므로 당사자로서도 ㅇㅇ제약(주)이 백삼을 그대로 판매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함
- 인삼산업법령에서 검사의 예외를 규정하는 이유는 인삼제품류는 인삼류와 달리 고도의 품질관리를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그 원산지, 제조자 및 판매자 등만을 표기하면 충분한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위 규정에 따라 검사를 받지 아니하려면 이 사건 백삼이 인삼제품류의 제조에 사용된다고 알았거나 그렇게 믿었을 충분한 개연성이 있어야 하나 고가의 백삼을 이용하여 저가의 인삼제품류를 제조한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아니함
- 결국 청구인은 ㅇㅇ제약(주)에서 백삼 그대로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또는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판매한 것이므로 검사의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자. 피청구인은 2015. ○. ○.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처분의 원인되는 사실
- 자체검사업체는 「인삼산업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체검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인삼류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인삼류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 귀 업체는 검사를 받지 아니한 백삼 1,220Kg을 경북 영천시 소재 ㅇㅇ제약(주)에 판매한 것을 2015.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ㅇㅇ지원 ㅇㅇ사무소 단속반에 적발되었음

● 처분내용
- 인삼류 자체검사업체 지정취소 (2015. ○. ○.)

● 법적근거 및 조문
- 「인삼산업법」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자체검사업체가 인삼류를 자체검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인삼류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인삼류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차. 「식품위생법」 제3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ㅇㅇ제약(주)이 2009. ○. 작성한 식품 품목제조보고서에 따르면, ‘ㅇㅇ 홍삼귤피차’ 의 원재료명(성분명) 및 배합비율은 유기농 귤피 70%, 홍삼 30%로 되어 있다.

카. 의약품 제조판매 품목신고(변경신고)필증 및 영업등록증에 따르면, ㅇㅇ제약(주)은 2014. ○. ○. 약사법령에 따라 ㅇㅇ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품명 ‘ㅇㅇ인삼’, 의약품 분류 ‘한약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의약품 제조판매 품목신고(변경신고)를 하였고, 2015. ○. ○.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 등에 따라 ‘식품제조 · 가공업’ 을 영업의 종류로 하여 영업등록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타. 한편 ㅇㅇ제약(주)은 2016. ○. ○. 진행된 구술심리에서 이 사건 백삼과 관련하여 인삼산업법령, 식품위생법령, 약사법령 등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인삼산업법」 제2조 및 제12조에 따르면, "인삼류제조" 란 수삼을 원료로 하여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을 제조하는 것을 말하고, "인삼제품류" 란 「식품위생법」 제14조에 따른 식품등의 공전(公典)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공전에 수록된 식품 중 인삼류를 원료로 하여 제조 · 가공된 식품을 말하는데, 인삼류제조를 업(業)으로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장(製造場)을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인삼류제조업자가 인삼류를 제조하고 남은 부산물을 원료로 하여 인삼제품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을 제조 · 가공하려는 경우에는 시장 · 군수에게 신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같은 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을 판매 또는 수출의 목적으로 제조한 자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검사를 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삼류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다만 인삼경작자가 자기가 생산한 수삼을 원료로 하여 자가제조(自家製造)한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을 수출 또는 도매의 목적으로 수집하는 자(이하 "수집자"라 한다)에게 판매하는 경우와 인삼류의 제조자 또는 수집자가 홍삼 · 태극삼 또는 백삼에 그 원산지, 무게 및 제조자와 판매자의 성명을 표기하여 인삼제품류의 제조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3) 같은 법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9조제2항 및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제17조제1항에 따라 자체검사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인력 및 자가제조하여 검사를 받은 실적과 제조관리기준서 등을 갖추어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으로부터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 등 인삼의 종류별 자체검사업체로 지정받아야 하고,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은 자체검사업체가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체검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인삼류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인삼류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그 시정을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검사정지를 명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또한 제17조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불합격한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은 판매 또는 수출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미검사품 또는 불합격품을 판매 · 수출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다.

4) 한편, 자체검사업체에 대한 시정명령 · 검사정지 또는 지정취소의 세부기준을 정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 및 별표 4에 따르면, 자체검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인삼류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인삼류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한 경우 1회위반에 대하여 지정취소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 판단

「인삼산업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등에 따르면, 백삼 등의 인삼을 판매 또는 수출의 목적으로 제조한 자 등은 자체검사를 하거나 인삼류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다만, 인삼류의 제조자 등이 백삼 등에 그 원산지, 무게 및 제조자와 판매자의 성명을 표기하여 인삼제품류의 제조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등에는 검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인삼을 특산물로 보호 · 육성하기 위한 「인삼산업법」 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인삼류에 대한 철저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검사를 받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 검사의 예외규정은 인삼제품류를 제조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무조건 인정되어야 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을 것이나, 위 단서조항의 문언상 인삼제품류의 제조자가 해당 인삼류를 매수한 후 실제로 인삼제품류의 제조에 사용하는지 여부를 인삼류의 제조자가 모두 파악하여 검사의 예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백삼을 ○○제약(주)에 판매하면서 해당 인삼류를 인삼제품류의 제조에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제약(주)의 주관적인 사정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보다 적극적인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다면 위 검사의 예외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제약(주)은 인삼류를 원료로 하는 인삼제품인 '○○홍삼귤피차' 등 식품과 '○○인삼' 등 한약재를 제조판매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약초의 효능에 대해 연구개발 등을 하는 업체이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백삼을 ○○제약(주)에 판매하면서 이 사건 백삼은 인삼제품류의 원료로 사용되고 식품위생법령이나 약사법령에 따른 검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이 일반인의 통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고, ○○제약(주)이 인삼산업법령이나 식품위생법령 등의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으며, 그 밖에 청구인이 ○○제약(주)에서 이 사건 백삼을 인삼제품류의 원료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적극적인 증거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 부당하다.

[조세심판 결정례]

쟁점부동산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글.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사 건	조심2016중OO (2016.11.14.)
세 목	양도소득세
결 정 유 형	기각

주 문 |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내에 소재하는 토지 및 건물의 지분(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을 OO(이하 "매수법인" 이라 한다)에게 **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하고, 매수법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이라 한다) 제77조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매수법인은 2000.0.00 쟁점부동산을 OO(이하 "재매수법인" 이라 한다)에게 양도하였고 재매수법인은 그 후 2000.0.00 서울특별시 OO구청장으로부터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았다.

다.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의 양도소득세 조사에 따른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매수법인이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사실이 없어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2000.0.00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매수법인은 OO구청장으로부터 OO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사업시행자로 지정받는 절차를 진행하는 동시에 위 구역 내의 부동산을 매집하는 중이었는바, 청구인은 사업시행예정자였던 매수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당시 시공사였던 재매수법인의 관계자가 입회한 가운데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쟁점부동산이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당시 조합 및 매수법인의 관계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확인하였고 감면관련 서류를 매수법인으로부터 받은 점, 매수법인이 자금사정으로 사업시행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신탁자로서의 권리를 포함한 사업권 일체를 재매수법인에게 양수도로 승계한 점, 이에 따라 재매수법인이 2000.0.00. 사업시행자가 된 점, 양도대금 중 잔금 **원은 재매수법인이 2000.0.00. 청구인에게 지급한 점, 매수법인 및 재매수법인은 사실상 사업시행자였고 재

매수법인이 조특법 제77조 제2항에 따른 감면적용 대상기간 내인 2OOO.O.OO 사업시행자로서 지정된 점, 조특법의 투자세액공제 등에 있어 사업의 승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감면추징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사실상 OO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자인 매수법인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조특법 제77조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조세감면요건은 특혜규정이므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지 아니하고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며, 조특법 제77조의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여야 하며 지정 전 사업자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매수법인은 OO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사실이 없음이 OO구청장의 공문에서 확인되는 점,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조특법 제77조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재매수법인으로부터 잔금을 받은 것과는 관계없이 2OOO.O.OO 매수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되어 양도가 완료된 점, 잔금을 늦게 지급한 것은 매매계약서상 특약에 따라 소유권이 불분명한 토지로 인한 것에 불과하고 이 토지 역시 2OOO.O.OO 소유권이전등기된 점, 잔금의 지급은 매수법인과 재매수법인의 채권채무 인수인계로 인한 것으로 청구인이 재매수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는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사업시행자에게 지정된 사실이 없는 매수법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관계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된 것)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괄호 생략]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은 제외한다)의 토지 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② 거주자가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자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자" 라 한다)로 지정되기 전의 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지정 전 사업자" 라 한다)에게 2년 이상 보유한 토지 등(제1항 제1호의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정비구역의 토지 등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고 해당 토지 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를 법정신고기한까지 한 경우로서 지정 전 사업자가 그 토지 등의 양도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감면할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감면율 등이 변경되더라도 양도 당시 법률에 따른다.

5 사실관계 및 판단

조특법 제77조 제1항 제2호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매수법인에게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점, 매수법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는 점, 조세를 감면하는 특례규정은 그 요건해당 여부를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할 사항으로 위 사업시행자의 범위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어 이를 매수법인으로 확대해석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Q&A

글.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실

시간선택제 일자리

법제처에서는 2008년 초부터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법률전문가의 시각에서 쓰인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해설하여 제공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시스템(http://oneclick.law.go.kr)』을 구축하여 2016년 12월 현재 서술형 234건, 사례형 18건 등 총 252건의 생활분야에 관한 콘텐츠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이 코너에서는 서비스 중인 생활분야에 대한 주요 궁금 사항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의 형식을 빌려 그 주요내용을 차례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시스템(http://oneclick.law.go.kr)』에 접속하셔서 '백문백답' 등을 통하여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Q

A

Q1

최근 학업이나 자녀의 육아 등을 위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시간선택제 일자리란 무엇인가요?

A1

"시간선택제 일자리" 란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전일제 근로자보다 짧게 일하는 것으로서, 크게 채용형과 전환형으로 구분됩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개념

- "시간선택제 일자리" 란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전일제 근로자보다 짧게 일하면서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보장되고, 차별이 없는 일자리를 말합니다 (「2016년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시행지침」 p. 9). 이러한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크게 채용형과 전환형으로 구분됩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유형

- "채용형 시간선택제" 란 피크타임 해소, 장시간 직무 분할, 우수 인력 확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 등을 위해 기업에서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는 유형입니다.
- "전환형 시간선택제" 란 육아, 학업, 퇴직준비, 건강, 가족돌봄 등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전일제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시간선택제로 전환하여 근무하다가 전환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전일제로 복귀하여 근무하는 유형을 말합니다 (「2015 시간선택제 일자리 안내서」 참고). 대표적으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건강유지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등이 전환형 시간선택제에 해당합니다.

Q2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일을 하려는 사람들에게는 근로조건이 어떤지가 가장 중요할텐데요.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일하더라도「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지, 통상 근로자에 준하는 대우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2

시간선택제 근로자는「근로기준법」과「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며, 통상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받지 않습니다.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법적 지위

■ 법률상「근로기준법」의 단시간근로자– 국고의 추가지원

– 시간선택제 근로자는 법률상「근로기준법」의 단시간근로자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시간선택제 근로자는「근로기준법」과「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 단시간근로자의 개념

– "단시간근로자" 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

–「근로기준법」의 단시간근로자에 해당되려면 사업장 내에 근로시간이 더 길고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가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단시간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2016 전환형 시간선택제 패키지 도입 운영 · 매뉴얼」 참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 근로시간 비례 보호 원칙

–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제1항).

■ 차별적 처우의 금지

– "차별적 처우" 란 다음의 사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 시간선택제 근로자라고 해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받지 않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 근로조건의 예외

–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에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규정 및 퇴직급여제도 적용이 제외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및「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

Q3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경우 일하는 시간이 적으니 임금을 어느 정도 받을지 여부가 궁금할텐데요.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임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3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임금을 산정할 때에는 시간급을 원칙으로 하며, 시간급 임금을 일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 수에 시간급 임금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임금

■ 임금의 계산

–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임금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제1항).

–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임금산정 단위는 시간급을 원칙으로 하며, 시간급 임금을 일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 수에 시간급 임금을 곱하여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2 제2호가목).

–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2제2호나목).

■ 임금의 차별적 처우 금지

– 사용자는 시간선택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에 비하여 임금, 상여금, 성과금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8조제2항).

Q4

육아, 학업, 건강 등의 사유로 하루에 일정 시간 이상을 일하기가 어려워 시간선택제로 일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이러한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야근이나 주말 근무 등 초과근로를 해야 하나요? 만약 하게 된다면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4

시간선택제 근로자에게 초과근로를 시키려면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초과근로시간은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시간선택제 근로자가 초과근로를 한 경우에는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과근로

■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 사용자는 시간선택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습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 사용자는 시간선택제 근로자와 합의한 경우에만 초과근로를 시킬 수 있으며, 사용자가 초과근로에 대하여 동의를 얻지 않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2 제3호나목).

– 사용자는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에 근로시키거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그 내용 및 정도를 명시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2제3호가목).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초과근로를 하게한 사용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가산수당

■ 사용자는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 사용자는 초과근로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지급률을 명시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2 제3호가목).

Q5

근로시간이 통상 근로자와 다르다 보니 휴게시간이나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한데요. 통상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했으니, 시간선택제 근로자도 휴게시간이나 휴가 등을 사용하고,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겠죠?

A5

네. 시간선택제 근로자도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쓸 수 있으며,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고,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

■ 사용자는 시간선택제 근로자에게 1일 근로시간에 따라 다음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

1일 근로시간	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	8시간
휴게시간	미부여 가능	30분 이상	1시간 이상

■ 휴게시간은 시간선택제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제2항).

주휴수당

■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시간선택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 이 경우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은 일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2 제4호가목 · 라목).

연차유급휴가

■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시간선택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봅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은 시간급을 기준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2 제4호나목 · 마목).

$$\text{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times \frac{\text{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text{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times 8\text{시간}$$

■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시간선택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

■ 사용자는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뺍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3항).

■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연차유급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

■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시간선택제 근로자에게 휴게시간,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를 주지 않은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Q6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선택제 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6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시간선택제 근로자에게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퇴직금

■ 사용자는 1년(52주 + 1일)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시간선택제 근로자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본문).

■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퇴직금 금액은 해당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제1항).

퇴직금제도의 설정

■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되며, 하나의 사업 안에 퇴직급여제도를 차등하여 설정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2항 및 제45조제1호).

퇴직금의 중간정산

■ 전환형 시간선택제의 경우 사용자는 시간선택제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6호의2).

Q7

지금까지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시간선택제 근로자뿐만 아니라 이러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도입한 사용자에 대한 혜택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A7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도입한 사용자에게도 혜택이 주어집니다.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도입한 사용자는 전환장려금,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지원금을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채용형 시간선택제를 통해 새롭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우에도 신규채용 시간선택제 근로자 임금의 50%를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환형 시간선택제 도입 지원

■ 지원요건

– 전환형 시간선택제 도입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2016 전환형 시간선택제 패키지 도입 운영 · 매뉴얼」 p. 127).

- 시간선택제 전환사유 해소 시 전일제 복귀를 보장하는 시간선택제 전환제도 마련
- 6개월 이상 고용된 전일제 근로자의 자발적 청구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시간선택제 전환 허용
-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 지원내용

–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도입한 사업주는 시간선택제 전환장려금,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지원금 등을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16년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시행지침」 p. 40).

구분	내용
전환장려금	· 주 15시간 이상 25시간 이하로 전환 시: 월 최고 40만원 · 주 25시간 초과 30시간 이하로 전환 시: 월 최고 24만원 · 임신 근로자: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근무로 전환한 경우에도 월 최고 40만원 지원 ※ 사업주가 전환 근로자에게 전환 전 시간비례 임금+추가 임금 · 수당 등 지급 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금을 지원(40만원 또는 24만원보다 추가 지급액이 적은 경우 그 금액을 지원)
간접노무비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한하여 전환형 근로자의 인사 · 노무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1인당 월 20만원 지원
대체인력 인건비	대체인력에게 지급하는 임금의 50%를 월 60만원(대규모기업 월 30만원) 한도로 지원

채용형 시간선택제 도입 지원

■ 지원요건

– 채용형 시간선택제의 도입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2016 전환형 시간선택제 패키지 도입 운영 · 매뉴얼」 p. 149).

- 시간선택제 근로자와 무기계약 체결
- 최저임금의 130%(중소기업은 120%) 이상의 임금 지급
-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 사회보험 가입 등 기본적 근로조건 보장
- 전일제 근로자와 균등 대우

■ 지원내용

– 신규채용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임금의 50%를 1년간 지원합니다 (「2016년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시행지침」 p. 50~51).

구분	내용
최저임금 130% 이상	근로자 1명당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50%를 월 80만원 한도(대기업은 월 60만원 한도)로 1년의 기간 내에서 지급
최저임금 120% 이상 ~ 130% 미만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한해 근로자 1명당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50%를 월 40만원 한도로 1년의 기간 내에서 지급

– 간접노무비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한해 임금수준과 관계없이 지원기간 동안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2016년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시행지침」 p. 51).

– 지원을 받는 근로자 수는 참여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에 그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 수의 30%(우선지원 대상기업은 60%)를 한도로 지원하며, 최소 지원인원 한도는 소속 근로자수와 관계없이 3명으로 합니다 (「2016년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시행지침」 p. 51).

새 법령 소개

1월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을 알려 드립니다.

- ✓ '17년 1월 1일 이후 제조하는 빙초산 제품에 어린이보호포장이 의무화 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1월 1일 시행)
- ✓ 물놀이형 어린이 놀이시설에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처치 관련 교육을 이수한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합니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1월 8일 시행)
- ✓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지역 간 교통수요 등을 고려하여 "사업구역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택시 사업구역을 지정 ·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1월 20일 시행)
- ✓ 설치 후 15년이 지난 승강기의 경우 정밀안전검사를 기존에는 한번만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3년마다 받도록 관리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1월 28일 시행)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12월에 총 44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1 일	• '17년 1월 1일 이후 제조하는 빙초산 제품에 어린이보호포장이 의무화 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8 일	• 물놀이형 어린이 놀이시설에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처치 관련 교육을 이수한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20 일	•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지역 간 교통수요 등을 고려하여 "사업구역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택시 사업구역을 지정 ·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8 일	• 설치 후 15년이 지난 승강기의 경우 정밀안전검사를 기존에는 한번만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3년마다 받도록 관리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7년 1월 1일 이후 제조하는 빙초산 제품에 어린이보호포장이 의무화 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1월 1일 시행

- 빙초산 제조 시 어린이보호포장을 의무화하도록 하여 화상 등에 대한 어린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 식품첨가물제조업자가 빙초산을 제조할 때 어린이보호포장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함.

- '17년 1월 1일 이후 제조하는 빙초산 제품에 어린이보호포장이 의무화 됩니다.
- 현재는 뚜껑을 열기가 쉬워 엎지를 경우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데, 어린이보호포장을 의무화하여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물놀이형 어린이 놀이시설에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처치 관련 교육을 이수한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 1월 8일 시행

-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요원 배치 근거를 마련하여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함
  -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관리주체는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함.(제15조의2)
  -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관리주체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제31조제1항제2호의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 1월 8일 시행

- 물놀이형 어린이 놀이시설에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처치 관련 교육을 이수한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 어린이 물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행정구역 이동시 택시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역 간 교통 수요 등을 고려하여 택시 사업구역을 지정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1월 20일 시행

- 현행법에서는 원칙적으로 택시의 사업구역은 단일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하고, 교통생활권을 기준으로 하지 않음. 인구증가와 도심 기능 확대에 따라 주민 생활권이 기존 도시와 인접 도시로 확대되고 행정구역 사이를 이동하는 교통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단일 행정구역 중심의 택시사업구역은 국민의 이동권을 제약하고 있음.
- 이에 택시 이용 시민의 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택시 사업구역을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고려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하도록 하려는 것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1월 20일 시행

-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지역 간 교통수요 등을 고려하여 "사업구역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택시 사업구역을 지정 ·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 택시이동 수요는 많으나 택시 사업구역이 달라 발생하는 승차거부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승강기 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설치 후 15년이 지난 승강기의 경우 정밀안전검사를 기존에는 한번만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3년마다 받도록 관리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개정, 1월 28일 시행)

- 승강기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노후 승강기에 대한 정기 정밀안전검사를 확대하고,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해 재검사를 받도록 하여 승강기의 장기간 방치에 따른 부작용과 승강기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함.
  - 지금까지는 승강기의 용도나 제어방식 등을 변경한 경우나 승강기 관리주체가 요청하는 경우 등의 경우에만 수시검사를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승강기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제어반(制御盤) 또는 구동기(驅動機)를 교체한 경우에도 수시검사를 받도록 함. (제13조제1항제3호)
  -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의 경우 승강기 관리주체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재검사를 받도록 함.(제13조제2항)
  - 설치 후 15년이 지난 승강기의 경우 지금까지는 한 차례만 정밀안전검사를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3년마다 정밀안전검사를 받도록 함. (제13조의2제1항)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개정. 1월 28일 시행

- 설치 후 15년이 지난 승강기의 경우 정밀안전검사를 기존에는 한번만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3년마다 받도록 관리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 노후 승강기에 대해 정기적 점검을 실시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017년 1월 시행법령 목록 (2016. 12. 30. 기준)

연번	법령명	법령종류	공포번호	소관부처	시행일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516호	환경부	1. 1.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599호	환경부	1. 1.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6158호	환경부	1. 1.
4	개별소비세법	법률	제14378호	기획재정부	1. 1.
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199호	문화체육관광부	1. 1.
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424호	문화체육관광부	1. 1.
7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대통령령	제27560호	경찰청	1. 1.
8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170호	고용노동부	1. 1.
9	고용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549호	고용노동부	1. 1.
10	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제26566호	인사혁신처	1. 1.
11	공무원임용시험령	대통령령	제26233호	인사혁신처	1. 1.
12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326호	국토교통부	1. 1.
13	관세법	법률	제13548호	기획재정부	1. 1.
14	관세법	법률	제14379호	기획재정부	1. 1.
15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957호	기획재정부	1. 1.
16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585호	기획재정부	1. 1.
17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7682호	기획재정부	1. 1.
18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7683호	기획재정부	1. 1.
19	관세사법	법률	제14462호	기획재정부	
20	교육세법	법률	제14380호	기획재정부	1. 1.
2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573호	기획재정부, 조달청	1. 1.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475호	기획재정부, 조달청	1. 1.
23	국가재정법	법률	제14381호	기획재정부	1. 1.
24	국가회계법	법률	제14463호	기획재정부	1. 1.
25	국세기본법	법률	제14382호	기획재정부	1. 1.
26	국세징수법	법률	제14383호	기획재정부	1. 1.
27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581호	국세청	1. 1.
28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384호	기획재정부	1. 1.
29	국제질병퇴치기금법	법률	제14404호	외교부	1. 1.

연번	법령명	법령종류	공포번호	소관부처	시행일
30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427호	문화체육관광부	1. 1.
3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475호	국토교통부	1. 1.
3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311호	국토교통부	1. 1.
3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331호	국토교통부	1. 1.
34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905호	국방부	1. 1.
35	군인사법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906호	국방부	1. 1.
36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국적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법무부령	제884호	법무부	1. 1.
37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7692호	기상청,행정자치부	1. 1.
38	내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579호	기획재정부	1. 1.
39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436호	보건복지부	1. 1.
4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443호	보건복지부	1. 1.
4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575호	보건복지부	1. 1.
42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28호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1. 1.
43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18호	농림축산식품부	1. 1.
44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25호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1. 1.
45	농어촌특별세법	법률	제14385호	기획재정부	1. 1.
46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제14481호	농림축산식품부	1. 1.
47	농지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27호	농림축산식품부	1. 1.
48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903호	농림축산식품부	1. 1.
49	도로교통법	법률	제13829호	경찰청	1. 1.
50	도로교통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626호	경찰청	1. 1.
51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환경부령	제677호	환경부	1. 1.
52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80호	문화재청	1. 1.
53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85호	미래창조과학부	1. 1.
54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2690호	법원행정처	1. 1.
55	법인세법	법률	제14386호	기획재정부	1. 1.
56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981호	기획재정부	1. 1.
57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82호	미래창조과학부	1. 1.
5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543호	기획재정부	1. 1.
59	부가가치세법	법률	제14387호	기획재정부	1. 1.
60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299호	국토교통부	1. 1.

연번	법령명	법령종류	공포번호	소관부처	시행일
6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률	제14153호	교육부	1. 1.
62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7691호	산림청,행정자치부	1. 1.
63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31호	산림청	1. 1.
6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169호	고용노동부	1. 1.
65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제14388호	기획재정부	1. 1.
6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30호	산업통상자원부	1. 1.
6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661호	산업통상자원부	1. 1.
68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37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1.
69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평정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38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1.
70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54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1.
71	소득세법	법률	제14389호	기획재정부	1. 1.
72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067호	기획재정부	1. 1.
73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982호	기획재정부	1. 1.
74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총리령	제1286호	국민안전처	1. 1.
75	소액사건심판규칙	대법원규칙	제2694호	법원행정처	1. 1.
76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652호	환경부	1. 1.
77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14466호	기획재정부	1. 1.
78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1232호	식품의약품안전처	1. 1.
79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681호	환경부	1. 1.
80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법률	제13738호	산업통상자원부	1. 1.
81	약사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453호	보건복지부	1. 1.
82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6234호	인사혁신처	1. 1.
83	우정사업본부 직제	대통령령	제27696호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1. 1.
84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86호	미래창조과학부	1. 1.
85	원자력 진흥법	법률	제13822호	미래창조과학부	1. 1.
86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법률	제14395호	교육부	1. 1.
87	의료법	법률	제13658호	보건복지부	1. 1.
88	의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700호	보건복지부	1. 1.
89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여성가족부령	제104호	여성가족부	1. 1.
90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207호	국토교통부	1. 1.
91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588호	국토교통부	1. 1.

연번	법령명	법령종류	공포번호	소관부처	시행일
9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법률	제14450호	국토교통부	1. 1.
9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458호	금융위원회	1. 1.
9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680호	기획재정부	1. 1.
9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393호	보건복지부	1. 1.
9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법률	제14500호	고용노동부	1. 1.
97	장애인복지법	법률	제13366호	보건복지부	1. 1.
98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4390호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1. 1.
99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86호	국토교통부	1. 1.
100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372호	국토교통부	1. 1.
101	중소기업기본법	법률	제14367호	중소기업청	1. 1.
10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369호	중소기업청	1. 1.
103	지방공무원 임용령	대통령령	제26640호	행정자치부	1. 1.
10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398호	교육부	1. 1.
10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법률	제14373호	교육부	1. 1.
10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법률	제14399호	교육부	1. 1.
107	지방세법	법률	제12153호	행정자치부	1. 1.
108	지방세법	법률	제13427호	행정자치부	1. 1.
109	지방세법	법률	제14475호	행정자치부	1. 1.
110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3637호	행정자치부	1. 1.
111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4477호	행정자치부	1. 1.
11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법률	제13428호	행정자치부	1. 1.
113	지방자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882호	행정자치부	1. 1.
114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463호	행정자치부	1. 1.
115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자치부령	제50호	행정자치부	1. 1.
116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698호	행정자치부	1. 1.
117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법률	제14501호	고용노동부	1. 1.
118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330호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1. 1.
119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701호	국토교통부	1. 1.
120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04호	특허청	1. 1.
12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589호	환경부	1. 1.
122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499호	국가보훈처	1. 1.
123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법률	제13693호	국토교통부	1. 1.

새 법령 소개

연번	법령명	법령종류	공포번호	소관부처	시행일
124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223호	국토교통부	1. 1.
125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7687호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1. 1.
126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214호	해양수산부	1. 1.
127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603호	환경부	1. 1.
128	광산안전법	법률	제13729호	산업통상자원부	1. 7.
129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308호	산림청	1. 7.
130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713호	법무부	1. 7.
131	새마을금고법	법률	제13725호	행정자치부	1. 7.
132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305호	행정자치부	1. 7.
13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법률	제13750호	국민안전처	1. 8.
13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1315호	국민안전처	1. 8.
13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제13752호	국민안전처	1. 8.
13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328호	행정자치부	1. 13.
137	선원법	법률	제14508호	해양수산부	1. 18.
138	건축법	법률	제13785호	국토교통부	1. 20.
139	건축법	법률	제14016호	국토교통부	1. 20.
140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법률	제13790호	국토교통부	1. 20.
14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797호	국토교통부	1. 20.
14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제13800호	국토교통부	1. 20.
143	철도안전법	법률	제13807호	국토교통부	1. 20.
144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13034호	환경부	1. 21.
145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608호	환경부	1. 21.
146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419호	환경부	1. 21.
147	우체국예금 · 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76호	미래창조과학부	1. 26.
148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375호	행정자치부	1. 27.
149	119구조 · 구급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913호	국민안전처	1. 28.
150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13874호	환경부	1. 28.
15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671호	환경부	1. 28.
15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392호	환경부	1. 28.
153	민방위기본법	법률	제13915호	국민안전처	1. 28.
154	사방사업법	법률	제14517호	산림청	1. 28.
155	산업표준화법	법률	제13847호	산업통상자원부	1. 28.
156	소방기본법	법률	제13916호	국민안전처	1. 28.
157	소방시설공사업법	법률	제13918호	국민안전처	1. 28.
158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1316호	국민안전처	1. 28.
159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411호	국민안전처	1. 28.
160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환경부령	제670호	환경부	1. 28.
16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879호	환경부	1. 28.
16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489호	환경부	1. 28.
163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법률	제13921호	국민안전처	1. 28.
164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제13924호	국민안전처	1. 28.
165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법률	제13859호	산업통상자원부	1. 28.
166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867호	중소기업청	1. 28.
16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834호	경찰청	1. 28.
16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92호	경찰청	1. 28.
169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672호	경찰청	1. 28.
170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3926호	국민안전처	1. 28.
171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1324호	국민안전처	1. 28.
17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917호	국민안전처	1. 28.
173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891호	환경부	1. 28.
174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672호	환경부	1. 28.
175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434호	환경부	1. 28.
176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법률	제13892호	환경부	1. 28.
177	자동차관리법	법률	제13933호	국토교통부	1. 29.
178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412호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	1. 29.

위 법령의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와 시행법령 미니 홈페이지 (www.moleg.go.kr/monthlylaw)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법제처는 새롭게 공포되거나 시행되는 법령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달력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법제처, 종합청렴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

2016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

- **법제처**(처장 제정부)가 **2016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종합청렴도 1등급 기관**으로 선정됐다.
  - 이번 1등급 기관 선정결과는 지난 2015년 평가결과(4등급)에 비해 **무려 3계단 이상을 뛰어올라 달성한 최고 등급**이다.

- 2016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총 606개 기관을 대상**으로 **2016년 8월부터 11월까지 법제처와 관련 있는 민원인, 공무원, 전문가 등**에게 **전화와 온라인(스마트폰, 이메일)을 이용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이다.
  - 이번 조사에서 법제처는 **종합청렴 점수 8.33점**(10점 만점)으로 **중앙행정기관**(41개 기관) **중 최고 점수**를 받았으며, 특히 민원인 등 외부고객이 평가하는 **외부청렴도**가 2015년에 비해 0.89점이나 상승한 **8.64점을 획득**하여 **전국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을 포함한 510개 기관) **중 최고 점수**를 기록하였다.
  - 또한, 법제처는 민원인 등 외부고객의 **금품 · 향응 · 편의 제공률** 0%로 청렴도 측정대상 기간 동안 **금품 · 향응 · 편의 제공 관련 부패행위가 전혀 없는 기관으로 평가**되었다.

- 평소 공무원의 청렴성을 강조해 온 **제정부 처장**은 "이번 청렴도 조사결과는 **지난 1년간 법제처 구성원들의 청렴의식과 각고의 노력으로 얻은 결과**" 라면서,
  - "앞으로도 청렴한 법제처 공무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발전시켜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법제처, 국민법제관 전체 간담회 개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규제체계 등 법적 쟁점 논의

각 분야별 국민법제관 70여명과 함께 1년간의 운영성과 공유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12월 7일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2016년도 국민법제관 전체 간담회(워크숍)를 개최했다.

- 올해 국민법제관 제도는 총 200여명의 국민법제관을 대상으로 **정부입법과정에서 국민 전문가 간 소통을 활성화하는데 주력하여, 다음의 사항을 개선 · 운영**해 왔다.
  - 언제, 어디서든 쉽게 법령정비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국가법령정보센터 **애플리케이션(App)에 국민법제관 참여 공간**을 마련한 점,
  - 법제처 · 소관부처 간의 법령안 심사 과정에 관련 분야의 국민법제관이 참석하여 전문가 의견을 제시하는 등 **법령심사업무에 직접 참여하는 국민참여 심사제를 도입**한 점,

  - 그리고, 유사한 분야의 국민법제관을 그루핑(grouping)하여 주제별로 법령 개선의견을 수렴하는 **분야별 간담회*를 운영한 점** 등을 꼽을 수 있다.

- 아울러,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진단하고, 이에 따른 법제 개선 방안에 관한 주제 · 토론이 이루어졌다.
  - 이 자리에 참석한 국민법제관들은 새로운 기술환경의 변화에 대한 기술 · 산업적 차원의 새로운 전략을 모색해야 하는 동시에 **이를 뒷받침할 법제도의 전환이 중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고,
  - 특히, 법제개선 방안에 관한 주제 발표를 맡은 목포대학교 법학과 김도승 교수(국민법제관)는 "우버택시 사례 등에서 볼 수 있듯이 4차 산업혁명 하에서는 특정 행위를 금지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등 **규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 **제정부 처장**은 간담회에 참석하여 "그 동안 법제처는 국민의 목소리를 법제업무에 반영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는 법령을 정비해왔다" 라면서,
  - "오늘 논의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법제개선 방향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법제처가 새로운 시대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

* **국민법제관** : '정부 3.0'의 일환으로 정부입법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령심사, 법령정비 등 주요 업무 과정에서 현장경험이 풍부한 국민법제관의 개선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로 2011년부터 운영 중

* 올해 1월부터 신산업, 안전, 행정, 주택 · 교통, 여성가족, 중소기업 및 노동 분야 등을 대상으로 분야별 간담회를 실시

법제처,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한 현장 간담회

제정부 법제처장, 사회복지인들과 함께 정책 간담회 가져

앞줄 오른쪽에서 세 번째 제정부 법제처장, 왼쪽에서 세 번째 김희숙 영명보육원장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12월 15일 **오전 세종시장애인복지관**(세종시 조치원읍 소재)에서 사회복지시설 관계자들과 함께 '**사회적 소외계층의 복지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분야 법령정비의견 수렴**' 이란 주제로 현장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 이날 간담회에는 제정부 법제처 처장, 한영수 법제정책국장 및 손권배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복지국장 등 정책 담당자를 비롯해,
  - 박정자 사회복지법인 이화 대표이사, 김희숙 영명보육원장, 한미희 평은복지재단 이사장, 김순자 종촌공립지역아동센터 센터장, 류권옥 세종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장, 류권식 세종재가노인복지지원센터 센터장 등 **노인, 장애인 및 아동 · 청소년 대상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주요 **제안의견**을 살펴보면,
  - 현행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의 아동복지시설 운영기준*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설립자(시설의 장) 및 그 가족이 아동복지시설에서 거주할 수 없도록 한 것과 관련하여,
  - **설립자 및 그 가족이 별도의 주거공간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규정을 따로 두어 아동복지시설 운영의 편의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보호종결 아동(연령이 18세에 달했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어 보호조치가 종료되는 아동)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학업, 취업, 소득, 주거 등의 **지원을 2~3년의 일정기간 동안 계속하여 빈곤의 대물림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 아동복지시설 안에서는 보호아동 및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외에는 거주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음(「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2).

- **제정부 처장**은 간담회에 참석하여 "열정과 사명감으로 소임을 다하고 계신 사회복지인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 라면서,
  - "법제처도 제안된 개선의견에 대해 복지부, 세종시 등 **관계기관과 면밀히 협의하여 체감도 높은 복지정책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발언하는 한미희 평은복지재단 이사장〉

법제처, 소외된 이웃을 위한 성금 기탁

전 직원 마음 모아 따뜻한 사랑의 정성 전달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연말을 맞이하여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고자 12월 20일 KBS 특별생방송 '나눔이 희망입니다' 를 통해 성금을 기탁했다.

- 이날 기탁한 성금은 법제처 전 직원이 자율적으로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마련된 것으로, 연말연시를 맞아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사용될 예정이다.

- 이날 기탁한 성금은 법제처 전 직원이 자율적으로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마련된 것으로, 연말연시를 맞아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사용될 예정이다.

- 제 처장은 이날 방송에서 "작은 정성들이 쌓여 우리 이웃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면서,
  - "희망을 가지고 함께 어려움을 헤쳐 나가자"라고 밝혔다

"작은 정성들이 쌓여
우리 이웃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법제처,
어린이법제관에게 꿈과 희망 전해요

지역아동센터 소속 어린이법제관 대상 나눔 행사 개최해

"법에 대해 좀 더 친해져 장차 어린이법제관들이 직접 훌륭한 법을 만들어 갈 수 있길 바란다"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연말을 맞이해 12월 22일 호텔ICC(대전 유성구 소재)에서 제9기 어린이법제관 100여명과 함께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가졌다.

- 이번 행사는 법제처에서 한 해 동안 마련한 각종 어린이법제관 행사에 참여하기 어려웠던 어린이법제관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 서울, 충북, 경북, 제주 등 전국 각지의 지역아동센터 소속 어린이법제관 100여명이 참여하여 법 관련 주제에 대한 토론, 입법체험현장 견학 등 다양한 입법체험활동을 즐겼다.

- 제정부 처장은 행사에 참석하여 "오늘 입법체험활동은 평소 쉽게 참여하기 어려웠던 어린이법제관을 대상으로 한 행사라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면서,
  - "법에 대해 좀 더 친해져 장차 어린이법제관들이 직접 훌륭한 법을 만들어 갈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한편, 법제처는 올해 제9기 어린이법제관 총 1,300명을 선발해 모의법안 발표회, 법령퀴즈 골든벨, 국회 탐방 등 연간 다양한 입법체험활동을 진행했다.

법제처, 자유학기제 연계 ‘진로체험학습’ 프로그램 마련

전북완주 화산중학교 학생 대상 법제관 진로 상담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12월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북완주 화산중학교 1학년 학생 32명을 대상으로 **‘법제처 진로체험학습’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 이번 **진로체험학습은 자유학기제와 연계**하여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법에 좀 더 쉽고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개최된 입법체험 프로그램으로서,

  – 헌법, 법률 및 하위법령 등 법령전체의 체계, 게임물 사용 등 학생들에게 유익한 생활법령 소개 등 기본 법제교육을 제공하고, 학생들의 법 관련 진로에 대한 상담 시간을 가졌다.

- **황상철 법제처 차장**은 행사에 참석하여, “청소년 시절은 다양한 꿈과 진로를 고민하는 시기”라면서, “법제처에서 준비한 진로체험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법에 대한 중학생 여러분들의 인식을 한 단계 더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 한편, 법제처는 **자유학기제와 연계**해 연간 **청소년법제관 운영** 외에 법과 관련된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 · 학교를 대상으로 진로 멘토링 등 진로체험학습 **프로그램을 계속 제공**하고 있다.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moleg.go.kr

■ 문의 : 법제정보담당관실
TEL. 044-200-6789

법제처 SNS

- twitter.com/Molegtwit
- www.facebook.com/Moleg.Korea
- moleg.tistory.com
- www.youtube.com/user/moleg1234

■ 문의 : 대변인실
TEL. 044-200-6516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제공정보 |

음식점(창업 · 운영), 아파트생활, 인터넷 이용자, 전자금융범죄, 부동산 경매, 임산부, 이혼 등 국민생활과 관련된 법령정보

| 이용방법 |

http://oneclick.law.go.kr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찾기쉬운 법령정보 검색

■ 문의 : 법제정보담당관실
TEL. 044-200-6790

민원인의 해석요청 절차

민원인은 해당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에게 법령해석을 요청하여 회신을 받은 후 그 회신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아래 중 하나의 절차를 거쳐 법제처에 법령 해석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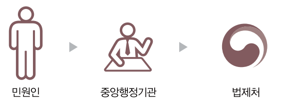

민원인이 해당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법제처 법령해석을 요청하도록 의뢰한 후, 그 **중앙행정 기관**이 **법제처**에 법령 해석 요청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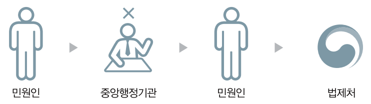

민원인이 해당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법제처 법령해석 요청을 의뢰하였으나, 그 **중앙행정기관**이 법제처 법령해석을 요청하지 않는다고 통보한 경우, **민원인**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 요청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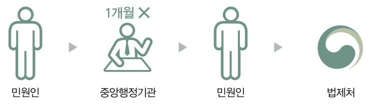

민원인이 해당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법제처 법령해석 요청을 의뢰한지 **1개월**이 지난 후에도 그 **중앙행정기관**이 법제처 법령 해석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민원인**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 요청

■ 문의 : 법령해석총괄과
TEL. 044-200-6707

사전입법지원 제도 이용안내

| 사전입법지원 요청권자 |

- 사전입법지원 제도의 이용을 원하는 중앙 행정기관 법령안 담당자

| 사전입법지원 대상 |

- 연도별 정부입법계획에 포함된 법률안
- 공약 · 국정과제 이행 법령안, 일자리 창출 관련법령안
- 다수 부처 관련 융합 · 복합 법률안, 이해관계가 복잡한 쟁점 법령안
- 손톱 밑 가시 등 정비대상 법령안, 하위법령 제때마련 대상 법령안

■ 문의 : 법제지원총괄과
TEL. 044-200-6834 leg.sd@korea.kr

자치법규 지원제도 이용안내

| 자치법규 의견제시 제도 |

- 자치법규의 입안 ·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 자문 제공

|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 |

- 지자체의 조례 전수를 검토하여 정비과제 발굴, 정비안 제공

|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 |

- 지자체의 제정 · 개정 조례안에 대한 종합 컨설팅 제공

|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 운영 |

- 직접 지자체를 방문하여 자치법규 입안 · 해석, 규제개혁 등에 대한 종합상담 및 교육을 지원

| 표준(모델)조례안 검토 지원 |

- 중앙행정기관이 법령 위임사항에 대한 표준(모델) 조례안을 작성하는 경우 종합검토 의견을 제공

■ 문의 : 자치법제지원과
TEL. 044-200-6761

국민결愛 110
정부민원 110

부패·공익침해 신고 1398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범위가 2017년부터 진료비까지 확대됩니다.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사업이란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발생한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 장애, 질병피해를 입은 환자에게 사망보상금, 장애보상금, 진료비, 장례비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의약품부작용 신고상담 및 피해구제 신청안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전화 1644-6223)

지급범위는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

- 2015. 12. 31.까지 : 사망보상금
- 2016. 1. 1~12. 31까지 : 사망보상금, 장례비 장애보상금
- 2017. 1. 1 이후 : 사망보상금, 장례비, 장애보상금, 진료비

주관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운영기관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국민안전처